제283회 임시회
2009. 9. 21(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 21.
행정소방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9.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강호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9조)
► 2014년 12월 31일까지
나.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안 제5조)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르면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공포 후 약 5년 3개월로 설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Ⅸ.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5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 2014. 12. 31까지(안 제9조)

○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 개정(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제4항 중 “책임중”을 “책임 중”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놓고”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제1항과 제2항, 제4조제1항과 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과 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항과 조문을 띄어 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무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②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채무상환비 비율이 10%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채무상환비 비율이 10%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방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방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현행 제9조와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